

정과장)

가. 제안이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비롯한 주차수요 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2)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3)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4)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5) 노상주차장의 주차카드판매, 하역주차구간 관리방법, 사용의 제한, 주차장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 단위 주차장의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7)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용자대상, 방법,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3. 전문위원회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 조례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대상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금 적용대상과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내용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산금 부과 내용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확대해석하여 적용된 규정이라고는 사료되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각자치구에 통보된 준칙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별표 1에서는 주차요금도 월 4만원의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골목길 주차질

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같은 방안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는 되나,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설시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안 제12조제3항에는 개인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선의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지 이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으로, 별표 1마록에 구청장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서울시장이 주차장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동교동이 시범설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될 때에 다른 동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 되겠는가?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 조례는 주차장 관리기준을 만드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전면 시행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대수와 주차면수의 수요공급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시범시행까지는 해보자는 관점에서 시범설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단속도 해보고 요금도 받아보고자 조례로 상정하였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본조례가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 있는 조례가 아니며 마포구 주민의 생활 편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 답변요지(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노상주차장 운영관리, 주차요금, 징수방안, 주차장표시, 주차시간, 용자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조례를 근거로 만들었습니다만 별표 1의 마항과 같은 예외사항도 있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그러면 좀 더 주민 홍보를 해본 뒤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요지(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상위법은 있었으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뜻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자는 것이며 외지인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다소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주차우선권을 주자는 것이며, 여건이 되는 주민이 찬성한 지역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지난번 1차 회의 이후 조례안에 대한 논란과 많은 검토가 있었음. 그중 제5조의 임의규정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앞으로 당국자는 모든 문제를 수렴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 바람.

○ 답변요지(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알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1996. 7. 10.
제안자: 도시건설위원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종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상반되는 내용을 수정조정함.

2. 주요수정골자

○ 안별표 1 제3호 다목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마목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8호로 수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종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 1 제3호 다목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마목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별표 1) 3.(생략) 가.~나.(생략) 다. 3급자: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 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라.(생략) 마.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협평을 유지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 정할 수 있다.	(별표 1) 3.(원안과 같음) 가.~나.(원안과 같음) 다.서울특별시장..... 라.(원안과 같음) 마.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삭제) 4.~8.(원안과 같음)
4.(생략) 5.~9.(생략)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년월일: 1996. 7. 4.
제출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미제정에 따른 입법불비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가산금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사용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노상주차장의 주차카드판매, 하역주차구
간 관리방법, 사용의 제한, 주차장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 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
시간단위, 주차장의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사.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
에 필요한 용자대상, 방법, 반환 등에 대
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3. 조례(안): 별첨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제
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의 제
13조제3항등

5. 예산조치: 필요

첨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안) 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
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주차시간
7.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3조(주차거부금지)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 2 장 노상주차장

제5조(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타시·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0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

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기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 3 장 노외주차장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활 계산한 금액

③ 공영주차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

한 금액에 사용월수 곱한 금액으로 하되, 3·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 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주차시간 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이내로 하고, 최초 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단위로 계산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서울특별시마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장 용 자

제15조(용자의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용자의 방법) ①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자금의 지급절차 및 용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용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分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주차 권(야간에 에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5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1급지	2천원	1천원	2천원	5천원	•	•	1천600원	800원	20만원	10만원
2급지	1천원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원	500원	12만원	6만원
3급지	400원	200원	200원	3천원	5만원	•	300원	150원	4만원	2만원
4급지	200원	100원	100원	2천원	3만원	2만원	200원	100원	3만원	2만원

※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1.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 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신촌 지역: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홍로를 잇는 도로·대홍로·용산선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나. 2급지: 1급지·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다. 3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라. 4급지:(1)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

차장

(3) 1~3급지 주차장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 마.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운행(자동차 등록 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이 10부제 운행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10부제운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分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주차 권(야간에 에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5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1급지	2천800원	900원	1천800원	4,500원	•	•	1천400원	700원	18만원	9만원
2급지	800원	400원	800원	3,500원	•	•	800원	600원	10만원	5만원
3급지	300원	150원	150원	2,500원	4만원	•	300원	150원	3만원	1만5천원
4급지	200원	100원	100원	2,000원	2만5천원	1만5천원	200원	100원	2만5천원	1만5천원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

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 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 등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 3, 4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8조제6항)

급 지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1급지	1,000원	15분당 1,000원
2급지	500원	15분당 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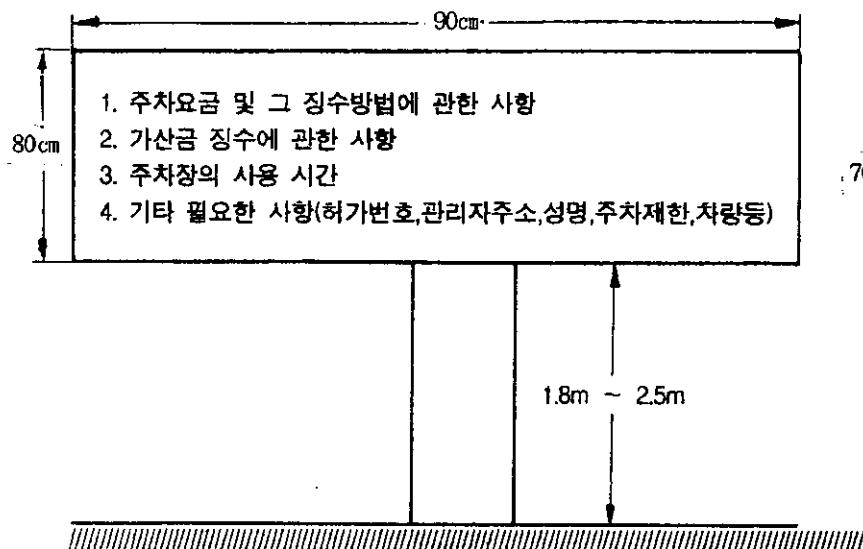
제39회 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 날인

의 강	李 宗一	사무국장	孫 東善
의 원	俞 南烈		
의 원	鄭 晚植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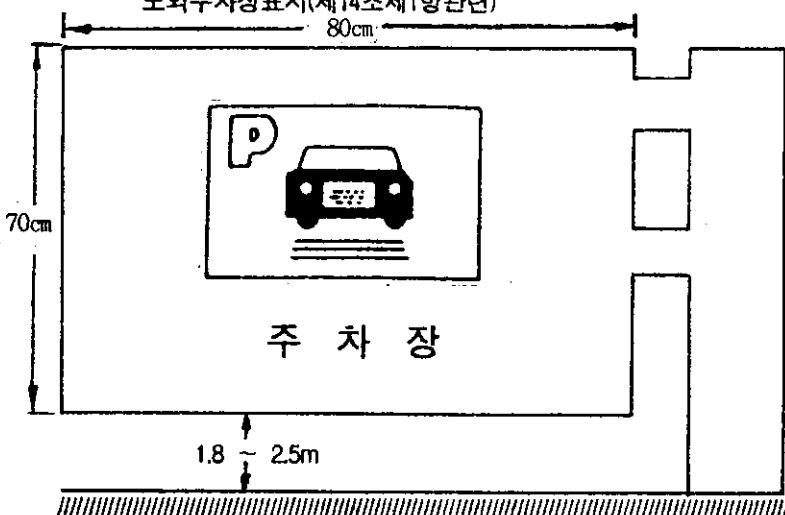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색	흰색
민영주차장		청색	흰색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14조제1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청색)

- 문 자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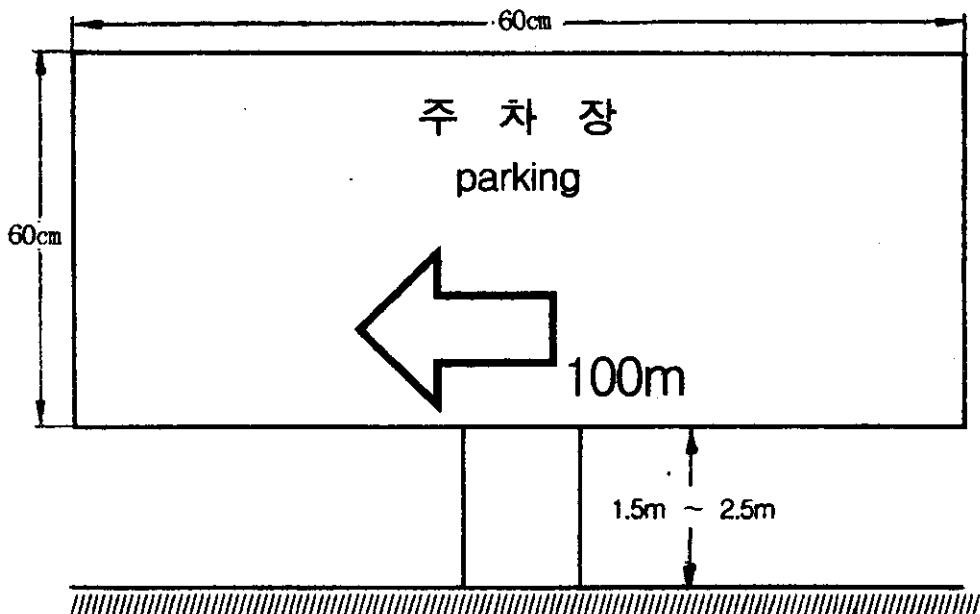
- 문자 및 기호 (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 세로 25센티미터)
문자 (가로 17, 세로 17센티미터)

- 아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을
하여야한다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제14조제3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서 주차장이용자가 식별
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